

의안번호	제 58 호
의결년월일	1998. 11. 26.
의결사항	원안가결

발의자	김연성의원외 3인
제출 년월일	1998. 11.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수신 의 장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안건 1부. 끝.



발 의 자 : 노 재 |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노재' (No Jae), written over a vertical line.

(찬 성 의 원 서 명 : 붙 임 참 조)

■ 제안설명

1.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에서 심의할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1995.10.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합니다. 부디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7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표

위원장 : 조강천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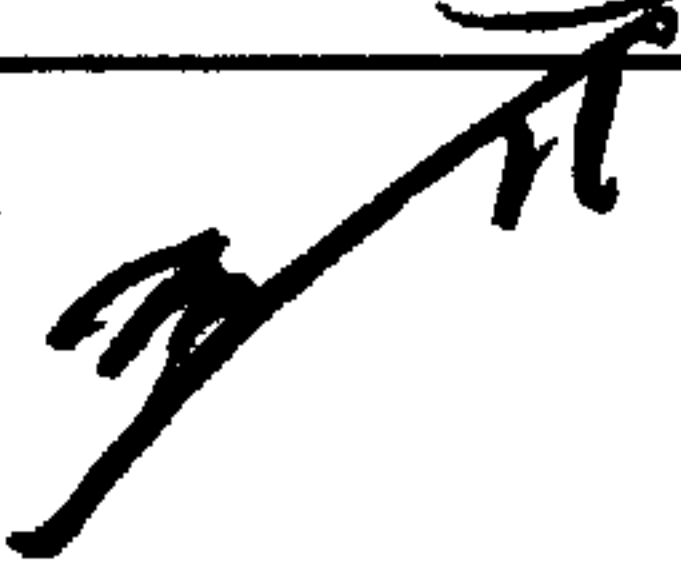
간 사 : 김연정 의원

2015.10.23

구 분	담 당 실 과	소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일반행정분야 (제1소위원회) <u>의 원 실</u>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 무 과 의회사무과	김 인 수	김 연 정 유 병 국 송 인 옥
사회복지행정 분야및 개발 행정분야 (제2소위원회) <u>특위사무실</u>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보 건 소 환경사업소 건 설 과	오 규 택	류 정 은 조 강 천
산업행정분야 (제3소위원회) <u>부의장실</u>	농 정 과 문화관광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우 채 명	이 익 규 정 기 형

의안찬성의원서명

2015.11.15

성명	서명	(인)
유재영		
신정호		
이재현		